DBpia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보호지원 시스템
성인보호서비스

저자
(Authors)

킴벌리 데이튼, 이정주

출처
(Source)

후견과 신탁 1(2), 2018.7, 99-111(13 pages)
JOURNAL OF GUARDIANSHIP AND TRUSTS 1(2), 2018.7, 99-111(1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20795

APA Style

킴벌리 데이튼, 이정주 (2018).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보호지원 시스템. 후견과 신탁, 1(2), 99-111

이용정보
(Accessed)

한양대학교
166.***.182.218
2020/04/25 03:4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일반논문 「후견과 신탁」 제1권 제2호(2018. 7): 99-111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보호·지원 시스템:
성인보호서비스*

킴벌리 데이튼 저**
이정주 역***

[목 차]

Ⅰ. 서(序)
Ⅱ. 본론
Ⅲ. 성인보호서비스와 장기요양 옴부즈맨 기관의 관계

[요 약]

"성인 보호(Adult protection)"는 주로 학대와 착취로부터 취약한 성인(주로 노인, 신체장애나 인지장애를 가진 자)을 보호하는 주(州) 차원이나 지역 차원의 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많은 활동들을 망라하는 광의의 용어로 미국에서 성인보호서비스는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착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 주 차원이나 지역차원의 보호적 활동, 각 주의 연방법상의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과 조사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주 성인보호서비스 기관과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임무에 있어 일정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주요 수단이며, 장기요양 옴부즈맨 기관은 장기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처음으로 대처하는 기관이다.

주제어: 미국, 성인보호서비스, APS(Adult Protection Service),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프로그램

---

* 본 논문은 K. Dayton교수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미국의 장애인의 사회통합 방향에 대한 두 편의 논문 중 두 번째 논문으로 첫 번째 논문(후견과신탁 창간호에 게재)과 본 논문은 내용이 연관성을 갖고 있으나 투고자가 두 논문을 각각 투고하였기에 part1은 창간호에, part2는 2호에 게재함(편집자 註)

** Professor Emerita,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St. Paul, Minnesota, USA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 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I. 서(序)

"성인 보호(Adult protection)"는 주로 학대와 착취로부터 취약한 성인(주로 노인, 신체장애나 인지장애를 가진 자)을 보호하는 주(州) 차원이나 지역 차원의 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많은 활동들을 망라하는 광의의 용어이다.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APS))는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착취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는 주 차원이나 지역차원의 보호적 활동, 각 주의 연방법상의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과 조사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과 기타 다른 법규상의 보조금, 즉 연방법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성인보호서비스제도의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주법상의 영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II. 본론

1. 주법상의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Provided Under State Law)

취약한 성인들에 대한 방치(neglect), 경제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 신체학대(physical abuse), 성 학대(sexual abuse) 등과 관련된 행동들이 미국 내에서 만연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나나타고 있다. 대개 그러한 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한 조사나 기소에 대한 부분은 연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차원의 문제이다. 몇몇 연방법에서 노인과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1] 본 장에서는 주 차원의 성인보호서비스관련법과, 나이

1)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및 방치를 언급하는 연방법에 대한 개관은 Center for Elders and the Courts, Elder Abuse Basics, Laws http://www. eldersandcourts.org/elder-abuse/basics/elder-abuse-laws.aspx.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나 장애로 인하여 취약한 대상자들의 학대, 착취 혐의에 첫 번째로 대응하는 성인보호서비스기관을 통한 관련 법률의 실행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성인 보호 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라는 용어는 취약한 성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다양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모든 주의 시스템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용은 다음과 같다.

- 성인보호서비스법상의 대상자들과 관련한 "취약한 성인(vulnerable adults)"과 "학대(abuse)"의 정의
-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대응방안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자치주(county) 또는 주(state)의 기관
- "학대 핫라인(abuse hotline)" 전화번호 혹은 학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처리해줄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알려주도록 만들어진 특정 전화번호
- 대부분 주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신고의무자"라고 불리는 특정 직업(은행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을 가진 구성원들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 신고의무자는 법에 따라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해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학대가 실제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에 기반한 학대 혐의를 보고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부터의 면책특권
- 학대신고의 타당성을 판단할 목적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와 의심되는 가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제한적 조사권한(Limited investigatory authority). 조사기관은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 소환권한을 가질 수 있다.
- 비상임시후견(emergency temporary guardianship)의 확보와 같이 피해자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수단

성인보호서비스를 위한 제정법상의 제도들은 민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은 성인보호기관의 구조, 권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성인보호서비스 관련 법률은 형법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보호기관은 법집행기관의 일부가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아니며 경찰과 검사가 가진 수사권한이 부족하다. 성인보호기관에게는 형법을 위반한 학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성인보호기관은 법집행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찰, 검사를 돕기도 한다.

성인보호서비스 관련법이 아동학대 조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을 성인 학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아동학대 보호 제도의 목표는 가족의 보호였다. 물론 학대당한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아동보호법(child protection law)의 주요 목적은 가족의 화해(family reconciliation)였다. 주 당국은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대개 아동학대에 가담한 부모나 친척들에 대한 기소를 꺼렸다. 어떤 의미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의 구조를 모델링 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서 폭행이나 태만과 같이 심각한 범죄혐의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된다.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구조를 노인 및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의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범죄였던 행위들이 단순히 "가족의 문제(family matters)"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바로잡을 수 없는 민사상의 권리침해(civil wrongs)정도로만 다루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중요 항목들과 같이 주(州) 성인 보호 서비스 제도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2)]

"취약한 성인(vulnerable adult)"의 정의: 대부분의 주법에서는 취약한 성인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 두 가지 접근법 중 한 가지를 취하고 있다. 몇몇 주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은 나이나 장애와 같은 자격에 의해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North Dakota 주법에서는 "취약한 성인은 상당한 정신적 혹은 기능적 장애(substantial mental or functional impairment)를 가진 성인을 의미한

2) 많은 주에서 학대의 피해자였던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구성원에게 민사적 손해배상(civil damages)과 다른 구제책을 청구하도록 하는 민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민법규정들이 취약한 성인 학대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다"고 규정하고 있다.[3] Utah의 주법에서는 65세 또는 그 이상인 자는 취약한 성인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4] 그러나 다른 관할권에서는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전체적인 상황이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공될 특정한 서비스를 고려하여 정의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1) "취약한 성인"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a) 60세 이상이거나 스스로를 돌봄에 있어 기능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능력한(functional, mental, or physical inability) 자
(b) CW에 따라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자
(c)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가 있는 자
(d) 시설에 입소한 자
(e) 허가받았거나 허가받을 필요성이 있는 가정의료서비스(home health), 호스피스, 혹은 자택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f) 개인적 서비스제공자(individual provider)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g) 자신의 치료 돌봄에 대하여 직접 지시를 하고 개인적인 간병인(personal aide)에게 서비스를 받는 자[5]

학대(abuse)의 정의: 노인 혹은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abuse)"의 정의에 대해서도 주법에서는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Illinois주의 취약한 성인관련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학대"는 해당 성인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착취를 포함하여 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상해를 야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성인이 보건의료서비스(health care service)에 의해서, 혹은 허가받은 보건의료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학대의 피해자

3) N.D. Cent. Code § 50-25.2-01.17.
4) Utah Stat. § 76-5-111(s).
5) Wash. Rev. Code § 74.34.020(21).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가 되었다고 해석될 수 없다.[6]

다른 주에서는 학대의 개념이 보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Georgia주의 학대관련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학대(abuse)"는 고의적으로 신체적 고통(physical pain), 신체적인 상해(physical injury), 정신적인 괴로움(mental anguish), 비합리적인 감금(unreasonable confinement)을 행하는 행위, 또는 장애를 가진 성인이나 노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9) "착취(Exploitation)"는 a) 장애가 있는 성인이나 노인, b) 부당한 위압(undue influence), 강압(coercion), 괴롭힘(harassment), 협박(duress), 사기(deception), 거짓 진술(false representation), 허위 표시(false pretense), 혹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이득을 위한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원을 불법적 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방치(Neglect)"는 장애가 있는 성인이나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정도로 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결여시키거나 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7]

학대의 정의에 대한 법규상의 차이는 주의 성인보호시스템의 책무의 특성과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 신고: 민사책임 면제(Reporting Abuse: immunity from civil liability).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대중들이 대상 성인이 피해 받고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공적인 관여를 용

6) 320 I11. Comp. Stat. § 20/2.

7) Ga. Code §§ 30-5-3(1),(9), and (10). 50개 모든 주의 학대관련 제정법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다.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State Resource, http://ncea.acl.gov/resources/state/html.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이하게 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많은 주들이 일원화된 특정 전화번호나 "학대 핫라인(abuse hotline)"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화를 통해 학대 신고가 처리되어 적당한 성인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이나 필요한 경우 추후 수사를 위해 법집행기관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일원화된 핫라인은 또한 자료수집과 신고에 따른 각 지역의 성인보호시스템 수사관들의 후속조치를 가능케 한다.[8] 신고가 비상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부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처리된다. 유감스럽게도 보조금문제로 인하여 초기 신고일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심한 경우는 일주일이 지날 때가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대 핫라인에 들어온 신고가 비상상황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11 비상 전화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법집행기관이나 응급 의료인에게 연결된다.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s): 누구라도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만 한다. 거의 모든 미국 주에서 특정 직업군의 구성원들에게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으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서 신고자는 취약한 성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학대의 징후와 증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관련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와 직업은 다음과 같다.

- 의료인 및 의료서비스 종사자(Health care providers and personnel)
- 정신보건사회복지사(Social and mental health worker)
- 성직자(Members of clergy)

---

8) 각 주와 지방의 학대 핫라인의 리스트와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State Elder Abuse Hotlines, http://www.nccafv.org/state_elder_abuse_hotlines.html.

9) 각 주의 신고의무 관련법의 리스트와 신고의무가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Law & Aging, Elder Abuse, Mandatory Reporting categories Charts, http://www.americanbar.org /content/dam/aba/administrative/law_aging/MandatoryReportingCategoriesCharts.xls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 법집행기관 및 소방서 직원(Law enforcement and fire department personnel)
- 간병인(Paid caregivers)
- 정신병원(mental health facility) 및 양로원(nursing home)과 같은 시설 직원
- 노인복지관(senior centers) 직원
- 후견인 및 관리인(Guardians and conservators)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규를 가진 절반이상의 주법에서 은행, 자산관리회사, 중개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취약한 성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의심될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 주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에게 해가되지 않는 선에서 의뢰인에게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10]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벌금(civil penalties)을 받게 되는데, 미신고가 실질적으로 제재로 이어진 것은 소수의 경우밖에 없다. 이러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규의 한 가지 주요한 문제는 학대의 징후나 증상이 항상 알 수 있는 수준이거나 신고의무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련연구에서는 많은 의료진들이 취약한 성인에 대한 육체적, 성적, 정서적학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충분히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11]

취약한 성인의 학대에 대하여 선의로 혐의를 제기한 자는 그 신고가 부정확한 경우라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러한 제한적 면책특권(limited immunity)제도는 학대의 증거가 명백한 수준이 아닌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노인에 대한 조사(Investigating elder abuse):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 방치,

---

10) Or. Rev. Stat. 124.050.9(r).

11) Debora B. Wagenaar, et al., Primary Care Physicians and Elder Abuse: Current Attitudes and Practices, J. Am. Osteopathic Ass'n Vol. 110, No. 12(December 2010), http://jaoa.org/article.aspx? articleid=2093880.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혹은 착취관련 조사를 위한 시행중인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 주의 성인보호서비스 절차에 근거하여 제시한 이하의 내용이 수사과정의 가장 일반적인 계획안이다.[12)]

- 성인보호서비스(APS)가 보고를 받고 당해 성인보호서비스기관에게 관할권이 있으며 대상 성인이 관련법상의 취약한 성인이라고 추정하면서 조사가 시작된다.
- 성인보호서비스 조사관이 (1) 예고 없이 가정을 방문하고, (2)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3) 조사관이 학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적인 서비스를 제안한다.
- 상황에 따라 조사를 위해 법집행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법집행기관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영장(warrant)이나 소환장(subpoena)과 같은 수사도구가 동원될 수 있다.
- 조사결과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성인보호서비스는 다른 유관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 및 부양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한 대상 성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부양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정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며, 비상 쉼터, 음식, 의료서비스 등을 찾아주는 것 등이 있다.

성인보호서비스 직원에게는 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사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형법 위반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성인보호시스템은 혐의가 있는 학대가해자를 법집행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비상 보호적 조치(emergency protective order)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법적 지원을 위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안이 중

12)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ome and Social Services, What Happens After You Contact Adult Protective Services, http://www.dshs.wa.gov/ altsa/home-and-community-services/what-happens-after-you-contact-adult-protective-services-aps.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대한 경우, 성인보호서비스는 비상 임시 후견인 지정을 위하여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과 협조할 수 있으며, 추후 영구적인 후견인 및 관리자(conservator)를 찾기 위한 정식 후견인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성인보호서비스의 한 가지 문제점은 피해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취약한 성인에 대한 대부분 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부양자, 친구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이 학대나 방치가 명백한 사건임에도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인보호서비스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수사를 위해 법집행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 사건처리의 경향으로 볼 때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사건의 기소는 법집행기관이 처리하는 사건들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상술한 바와 같이, 주(州) 성인보호서비스 기관들은 취약한 성인에 대한 잠재적인 학대, 방치, 착취를 수사하는 시작점이 된다. 연방정부기관들이 학대사건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성인보호서비스에 연방법이 적용되는 중요한 한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기요양서비스 옴부즈맨 기관(Long Term Care Ombudsman Offices(LTCOO)이다.[13]

장기요양 옴부즈맨은 양로원(nursing homes), 숙식제공시설(board and care homes), 노인원호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유사 성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 주, 국가차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다.

---

13)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Administration on Community Living,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http://aoa.acl.gov./AoA_Programs/Elder_Rights/Ombudsman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첫 번째 주(州) 장기요양 옴부즈맨 기관은 1972년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콜롬비아(Columbia),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괌(Guam)을 포함한 모든 미국 주에 설립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14]의 III장 및 VII장 및 기타 연방법에 따라 시행되며 보조금을 받는다. 각각의 주는 주 장기요양 옴부즈맨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전일제 옴부즈맨이 상주하고 있다. 장기요양 옴부즈맨 사무실의 전문분야는 양로원(nursing home)과 같은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치와 같은 문제해결이다. 프로그램의 인적 구성은 유급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옴부즈맨들은 시설 거주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도우며 스스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시설거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시설 거주자, 그들의 가족, 그밖에 관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설 내 문제의 접수, 조사, 해결
- 양로원(nursing home), 숙식제공시설(board and care homes), 노인원호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주거시설 및 기관시설(residential and institutional facilities)에 대한 불시 방문 및 예고 방문을 통한 점검
-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와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내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직원 교육
- 시설관리직원(facility management personnel), 가족 구성원, 시설내 거주자와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상담[15]

연방 Administration on Community Living에 따르면 2013년 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다음의 내용이었다.

---

14) 미국노인법은 42 U.S.C. §§ 3001-3058ff에 성문화되어 있다.

15) Administration on Community Living,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http://aoa.acl.gov/aoa_Programs/Elder_Rights/Ombudsman/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 부당하게 쫓아내거나 부적절하게 퇴거시키는 경우
-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 시설내 거주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거나 직원들의 태도가 좋지 못한 경우
- 삶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특히 룸메이트와 갈등이 있는 경우
- 약물의 관리 및 준비와 관련한 문제

Ⅲ. 성인보호서비스와 장기요양 옴부즈맨 기관의 관계

주 성인보호서비스 기관과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임무에 있어 일정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이 기여한 부분을 조정하는 일이 항상 순조로운 일만은 아니다.[16] 하지만 요컨대,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주요 수단이며, 장기요양 옴부즈맨 기관은 장기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처음으로 대처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 옴부즈맨 기관은 수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성인보호서비스기관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양 기관은 해당 사건이 범죄행위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투고일: 2018. 1. 10. 심사일: 2018. 7. 25. 게재확정일: 2018. 7. 27.

16) 과거에 업무 중복에 대하여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Coordination Between Long-Term Care Ombudsman and Adults Protective Services Programs and Related Issues, Report on a Meeting Sponsored by the Administration on Aging on October 25-26, 1993 in Washington, D.C., available at http://tinyurl.com/gvjdblo.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

▌참고 문헌 ▐

Administration on Community Living,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http://aoa.acl.gov./AoA_Programs/Elder_Rights/Ombuds_ man

Center for Elders and the Courts, Elder Abuse Basics, Laws http://www.eldersandcourts.org/elder-abuse/basics/elder-abuse-laws.aspx.

N. D. Cent. Code § 50-25.2-01.17. https://wwwl egis.nd.gov/cencode /t50.html

Utah Stat. § 76-5-111(s). https://le.utah.gov/xcode/Title76/Chapter5 /76-5-S111.html

Washington. Rev. Code § 74.34.020(21). http://app.leg.wa.gov/RCW/ default.aspx?cite=74.34.020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State Resource, http://ncea.acl.gov/resources/state/html.

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State Elder Abuse Hotlines, http://www.nccafv.org/state_elder_abuse_hotlines.html.

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Law & Aging, Elder Abuse, Mandatory Reporting categories Charts,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administrative/law_aging/Mandatory Report_ingCategoriesCharts.xls

Debora B. Wagenaar, Rosenbaum R, Page C, and Herman S., Primary Care Physicians and Elder Abuse: Current Attitudes and Practices, J. Am. Osteopathic Ass'n Vol. 110, No. 12(December 2010)

한양대학교 | IP:166.***.182.218 | Accessed 2020/04/25 03:48(KST)